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8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윤창현

송언석 · 성일종 · 정희용

최춘식 · 강대식 · 추경호

구자근 • 박대수 • 신원식

김형동 · 홍석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 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 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 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 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

<u><신 설></u>	7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